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988 |
|------|------|

2020. 11.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간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함.

1) 국가의 사무에서 시 또는 국가시 공동사무로 전환된 사무를 구 청장에게 위임함.

- ▶ 물가안정과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 건축사무소의 개설신고,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시정명령, 건축사업신고부의 정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사무위임 주체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시행인가, 공사완료 확인, 사용개시기간 지정, 시정명령 등

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실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사무를 구 청장에게 위임함.

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주관부서명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사무 위임의 변경

-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앙 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이양사무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음(2020.1)
- 사무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서울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위임 사무의 변동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변경되는 위임 사무는
 - ▶ 서울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되는 경우와, ▶ 국가 사무가 서울시로 이양되는 경우로 구분됨.

- 서울시 고유 사무에서 자치구로 이양되어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무는 총 13개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제작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변경신고), 신고증·등록증 교부, 영업폐쇄명령,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공사 시행의 인가(변경인가), 터미널공사 완료 확인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input type="checkbox"/> 경제정책실(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 | <input type="checkbox"/> 경제정책실(주관부서: 삭제) | | |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u>구청장</u> | <u><삭 제></u> | <u><삭 제></u> | <u><삭 제></u> |

| 현행 | | | 개정안 |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나. 폐업 신고 및 작권말소 | 제6조, 제10조, 제11조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 | | |
|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 | |
| 라.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법 제29조 | | | | |
| 마. 청문 | ○음악산업법 제30조 | | | | |
| 바. 수수료 | ○음악산업법 제31조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7조 | | | | |

□ 도시교통실(주관부서 : 주차계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
|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 청기간의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이하 사목 까지 ‘여객자동차 법’이라 한다) 제38 조제1항 및 제3항 | |
| 나. 터미널공사 완료 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 |
| 다. 터미널 사용개시 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 |
| 라. 터미널 사업자의 | ○여객자동차법 | |

□ 도시교통실(주관부서 : 주차계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1. ----- ----- | | ----- |
| <삭제> | <삭제> | |
| <삭제> | <삭제> | |
| <삭제> | <삭제> | |
| <삭제> | <삭제> | |

| 현행 | | | 개정안 |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제42조제3항 | | | | |
|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 | <삭제> | <삭제> | |
|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 가. ----- -----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 | 나. ----- | ○----- ----- | |

□ 주택건축본부(주관부서: 건축기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
|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다 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 |
| 나. 검 사 | ○승강기법 제21조 | |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승강기 시 설안전관리법」 제2 8조의 승강기 관리 | ○승강기법 제28조 | |

□ 주택건축본부(주관부서: 건축기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1.----- ----- | | ----- |
| <삭제> | | |
| 가. ----- - |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75조 | |
| 나. ----- ----- ----- | ○「승강기 시설 안전관 리법」 | |

| 현행 | | | 개정안 |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 | | 제82조 제5항 | |

-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국가 사무에서 서울시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 중 자치구로 위임되는 사무는 총 11개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 신고(변경신고) 또는 휴·폐업의 신고, 효력상실 처분 업무,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국가에서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

| 현행 | | | 개정안 | | |
|------------------------|------|------|------------------------------------|---------------------------------------|------|
| □ 노동민생정책관(주관부서: 공정경제과) | | | □ 노동민생정책관(주관부서: 공정경제과)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1. ~ 4. (생략) <신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
| | | |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
| | | |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 ○ 같은 법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
| | | |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 ○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
| | | |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 |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 | |

| 현행 | | | 개정안 |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 4.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 주택건축본부(주관부서: 건축기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신설> | | |

□ 주택건축본부(주관부서: 건축기획과)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 구청장 |
|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
|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업무 정지명령 및 사장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 | |
|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 ○「건축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
| 라. 보고 및 검사 | ○「건축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
| 마. 과태료 부과 징수 (「건축사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 ○「건축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

| 현행 | | | 개정안 |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 |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 □ 물순환안전국(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 | | □ 물순환안전국(주관부서: 물재생계획과) | | |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신설> | | |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
| | | |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 |

- 그 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없이 사무만 이양을 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비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함.
- 또한, 국가에서 이양된 사무의 경우 종전의 담당부서와 정보 공유 및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
- 한편, 개정안에서는 ▶ 위임 사무명과 근거 법령의 불일치, ▶ 근거 법령의 잘못 인용, ▶ 위임사무명이 법령과 달리 표기 또는 불명확, ▶ 법령 표기 방식이 제각각 다른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개정안을 비롯해 기존 사무위임 전반에 대한 통일성 있는 재정비가 요구됨.

| 유형 | 사례 |
|------------------|--|
|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불일치 | 건축사 관련 위임사무는 현행 시행령을 인용한 것으로, 2021년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전부 삭제됨(건축사 징계 권한의 위임조항만 남음) |
| 인용법령·조문 오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 제1호의2 |
| 위임사무명의 불명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승강기법 제21조) → 보고 및 검사 ▶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가격표시명령 위반,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 및 나목 위반의 명령·검사 위반) |
| 법령 표기 방식의 통일성 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명을 그대로 사용 : 건축사법 ▶ 약칭 사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 같은 법 사용 : 같은 법 제○조(같은 법 시행령 제○조) |

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자치구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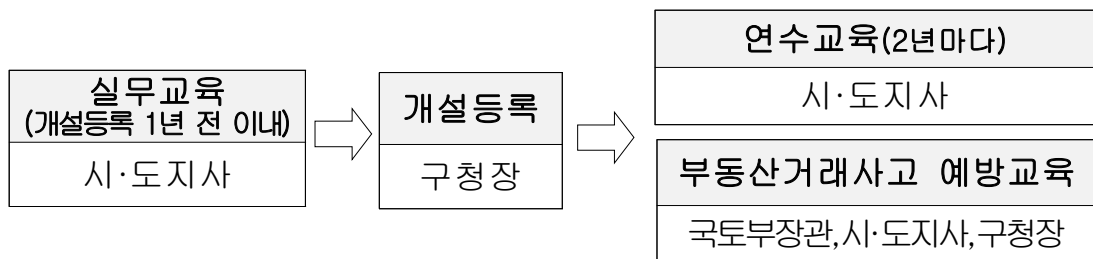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무 중 교육 실시,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및 교육 대상자 통지 등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리하는 자치구에 위임해 사무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치구 위임안>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 도시계획국(주관부서: 토지관리과) | | | □ 도시계획국(주관부서: 토지관리과) | | |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1.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 | 구청장 |
| <신설> | | |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 | |
| | | | 가. 연수교육 실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 |
| | | | 나.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 |
| | | |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8조제4항 | |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에 앞서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제34조제4항)¹⁾

<공인중개사 관련 교육의 종류>



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2014년 부동산 시장의 급변과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연수교육을 의무화 했음.

<서울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 45,000여 명
 - ※ 「공인중개사법」 상 연수교육 대상자 약 26,000여 명
 - 2018년 교육 해당자 : 19,437명 / 2019년 교육 해당자 : 6,414명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연수/직무교육** 실적(의무교육)

| 연 도 | 실무교육 | | 연수교육 | | 직무교육* | |
|------|------|-------|------|--------|-------|-------|
| | 회 수 | 수료인원 | 회 수 | 수료인원 | 회 수 | 수료인원 |
| 2019 | 182 | 7,126 | 139 | 6,749 | 62 | 5,965 |
| 2018 | 186 | 7,759 | 370 | 18,796 | 67 | 6,773 |
| 2017 | 205 | 7,649 | 109 | 4,734 | 81 | 7,168 |

*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인'에 한함.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적(임의교육)

| 연 도 | 회 수 | 참석인원 | 비 고 |
|------|-----|--------|---------------|
| 2018 | 11 | 6,809 | 11개 자치구 자체 실시 |
| 2017 | 26 | 10,401 | 16개 자치구 자체 실시 |

- 의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

| 교육기관명 | 교육장 위치 |
|------------|----------------|
| 건국대학교 | 노원구 공릉로 232 |
| 동국대학교 | 중구 필동로1길 30 |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성동구 왕십리로 303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노원구 공릉로 232 |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강남구 봉은사로 405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
| | 도봉구 마들로 11길 65 |
| | 은평구 통일로 856 |
| | 송파구 올림픽로 289 |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중랑구 망우로 353 |
| 한양대학교 | 성동구 왕십리로222 |

- 그러나 연수교육은 집합교육 장소의 지역적 편중,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자치구 자체교육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²⁾.

2) 제290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11.14.)

- 연수교육은 현재 8개 기관이 위탁받아 11개 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강남권역에는 교육장이 3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비용이 지원³⁾되는 임의교육(부동산거래 사고 예방교육)과 달리 연수교육은 자부담이므로 지원을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0.1.9.),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운영할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 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같이 연수교육을 자치구에 위임해 자치구 자체교육과 통합 시행할 경우, 공인중개사 관리(개설등록, 고용인신고, 인장등록,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지도·감독 등)와 교육 관련 업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임의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의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등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과 성격이 달라 통합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자치구에서 연수교육을 수행하게 되면 교육 위탁 기관과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교육 일정을 협의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에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았고 16개 자치구는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음.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조회 기간 : 2020.8.5.(수)~8.10.(월) ○ 동의 및 비동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회신 : 16개 구청 / 비동의 : 9개 구청 ○ 비동의(9개 구청) 사유 | |
|---|---|
| 자치구명 | 비동의 사유 |
| 용산, 중랑, 도봉, 노원 | - 연수교육 사무는 시·도 단위 업무에 해당함 |
| 은평, 마포 | - 교육주체 변경에 따른 수강신청자 혼란 예상 - 연수교육의 성격 및 중요도 등 고려하여 공인중개사법상 시장의 업무로 규정한 입법취지 고려 - 예산 및 인력 부족 |
| 구로 |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임 - 연수교육은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 실시 |
| 서초 | - 자치구 집합교육은 중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부정기) 2시간 이내 (생업편의) 자치구별 형편에 맞게 실시하므로 연수교육과는 법적 성격이 다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하여야 하므로 자치구는 교육실시 기관이 될 수 없음 |
| 송파 | -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 변경 교육 기능을 위해 개별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교육주체 변경에 따른 중요성 및 강제성 저하 |

- 또한, 미회신한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선확인을 한 결과, 명시적으로 동의 의견을 밝힌 자치구는 2곳에 불과했음.

<위임사무 동의 여부에 대한 자치구 유선 확인 결과>

| 동의여부 | 자치구명 | 비고 |
|------|---|--|
| 동의 | 강동구, 관악구 | |
| 비동의 | 양천구, 종로구, 강남구 | 구두로 반대의사 전달(양천구), 반대의견 제시했으나 회신기간 도과(종로구, 강남구) |
| 미회신 | 중구, 금천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광진구 | 서울시 의견조회 당시 회신하지 않음 |
| 기타 | 영등포구, 동대문구 | 인사이동, 담당자 휴가로 확인이 늦어 회신하지 못함 |

- 서울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경우 수임기관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수임기관이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임기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7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88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함.

1) 국가의 사무에서 시 또는 국가·시 공동사무로 전환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 ▶ 물가안정과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 건축사무소의 개설신고,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시정명령, 건축사업신고부의 정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사무위임 주체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시행인가, 공사완료 확인, 사용개시 기간 지정, 시정명령 등

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실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주관부서명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9. 10.~10. 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노동민생정책관 표 중 공정경제담당관에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p>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p> <p>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p> <p>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p> <p>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p> | <p style="text-align: center;">구청장</p> |
|---|--|--|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중 경제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버스정책과 제14호의 사무명란 중 “제24호라 목마목 및 제27호”를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표 주차 계획과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중 건축기획과란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및 다 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가목(중전의 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 기법 제21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5조”로 하고, 나목(중전의 다 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법 제28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으로 하며, 건축기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 | |
|---|---|-----|
|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 | 구청장 |
|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 업·폐업의 신고 수리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 |
|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 | |

| | | |
|---|---|--|
| <p>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p> | <p>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p> | |
| <p>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p> | <p>○「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p> | |
| <p>라. 보고 및 검사</p> | <p>○「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p> | |
| <p>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p> | <p>○「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p> | |
| <p>바. 처분내용의 통지</p> | <p>○「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p> | |

별표의 □ 도시계획국 표 토지관리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p>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p> | | <p>구청장</p> |
|---|--|------------|

| | | |
|----------------------------|-----------------------|--|
| 가. 연수교육 실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 |
|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 |
|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

별표의 □ 물순환안전국 표 물재생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
|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호)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 노동민생정책관 | | | | □ 노동민생정책관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공정경제 담당관 | 1. ~ 4. (생략) <u><신설></u>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
| | | | | 가. 가격표시 의무의 지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 |
| | | | |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 |
| | | | |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 |
| | | | |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

현 행

□ 경제정책실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경제정책과 |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음악산업법 제29조 ○ 음악산업법 제30조 | 구청장 |

개 정 안

□ 경제정책실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
| | 바. 수수료 | ○음악산업법 제31조 | | | | |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7조 | | | | | |
| □ 도시교통실 | | | | □ 도시교통실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버스정책과 | 1. ~ 13. (생 락) | | | 버스정책과 | 1. ~ 13. (현행과 같음) | | |
| |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 목, 나목, 제15호가목, 나목, 제16호나목, 제 24호라목마목 및 제 27호에 해당하는 처 분을 제외한 처분 | | | | 14.----- ----- ----- ----- ----- ----- ----- ----- ----- 제 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 ----- |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주차계획과 | 15, 16. (생략) | | 구청장 | ----- | 15, 16. (현행과 같음) | | ----- |
| |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 |
| |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 | <삭제> | <삭제> | |
| |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 | | <삭제> | <삭제> | |
| |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 | | <삭제> | <삭제> | |
|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 <삭제> | <삭제> | | | | |

현 행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 |
| |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
| |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 |

□ 기후환경본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생략) | (생략) | (생략) |

개 정 안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삭제> | <삭제> | |
| | 가. ----- ----- | ○----- ----- | |
| | 나. ----- ----- | ○----- ----- | |

□ 기후환경본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 ----- ----- (물재생계획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 행

□ 주택건축본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건축기획과 |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승강기법 제21조 ○승강기법 제28조 | 구청장 |
| | <신 설> | | |

개 정 안

□ 주택건축본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 1.----- ----- <삭 제> 가. ----- 나.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5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 | ----- |
| |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구청장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 | | | | <u>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u> | <u>○「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및 제6 호)</u> | |
| | | | | | <u>다. 건축사업무신고부 의 정리</u> | <u>○「건축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u> | |
| | | | | | <u>라. 보고 및 검사</u> | <u>○「건축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u> | |
| | | | | | <u>마.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 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u> | <u>○「건축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u> | |
| | | | | | <u>바. 처분내용의 통지</u> | <u>○「건축사법」 제22조 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 항제2호)</u> | |

현 행

□ 도시계획국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토지관리과 | 1. (생 략) <신 설> | | |

개 정 안

□ 도시계획국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토지관리과 | 1. (현행과 같음) 2. <u>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u> 가. <u>연수교육 실시</u> 나. <u>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u> 다. <u>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u> |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 51조제5항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8조제4항 | 구청장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 물순환안전국 | | | | □ 물순환안전국 | | | |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거법령 | 수입기관 |
| 물재생 계획과 | <신 설> | | | 물재생 계획과 |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 계영향권별 오염 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 항제1호) | 수입기관 구청장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조직담당관 최현수(2133-6754)